

산업재해감소대책세부시행계획

노동부
1992. 8

목 차

I. 계획추진개요

II. 사업별 세부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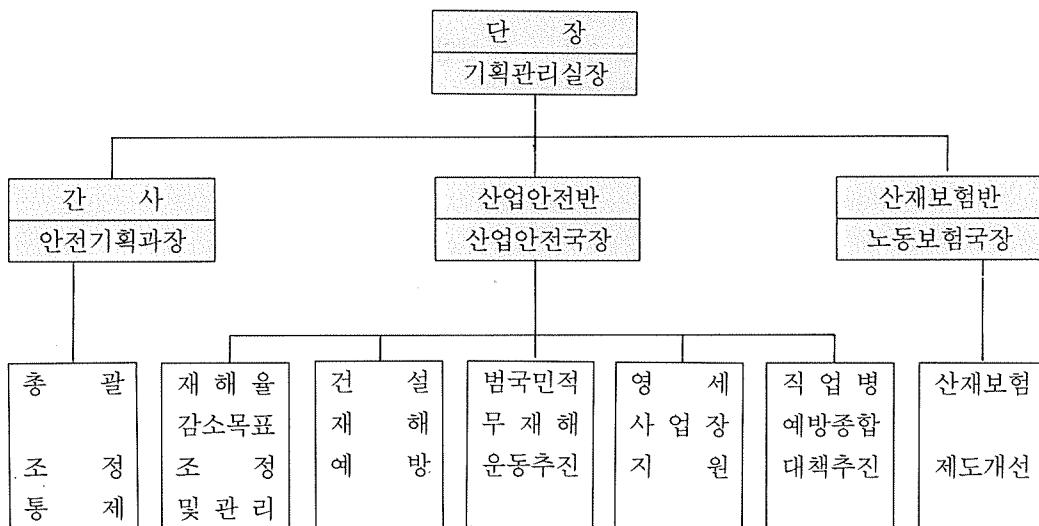
1. 재해감소목표 조기달성
2. 사망등 중대재해 감소대책 수립·시행
3. 건설재해예방 강화
4. 범국민적 무재해운동 추진
5. 50인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강화
6. 직업병예방대책 지속추진
7. 산재예방 관련조직 확충

I. 계획추진개요

○ 배경

— '92. 8. 18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산업재해감소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·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○ 대책추진 기획단 구성·운영



- 추진방법
 - 산업재해감소대책상의 항목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반별로 추진하되
 - 세부내용별 담당자지정 책임추진제 실시
 - 계획 자체가 재해감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강화
 - 법령개정등은 입법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타부처 관련사항은 개정요구안을 작성 개정 협조요청
 - 기존 추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
 - 분기별실적을 평가 탄력적으로 보완추진
- 예산
 - 대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중 '92년도분은 기존예산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업비로 우선 충당하고 필요시 절감예산을 사용
 - '93년도 사업비는 '93산재예방기금운용계획에 반영

II. 사업별 세부추진계획

분야	단위사업	세부추진내용	추진일정	비고
1. 재해감소목표 조기달성	가. 재해율 감소 목표 수정 나. 제1차 산재예방 6개년계획 수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표재해율 및 사망재해율 수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표재해율 '96년 0.93%→'94년 0.9% ('96년 목표도 수정) - 사망재해율 '96년 1.50→'94년 1.50 ○ '92년도 지방노동관서별 감소목표 수정 시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종별, 전년도 발생현황 고려 달성 가능한 목표 부여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92. 7. 25 수립한 산재감소대책의 목표재해율 및 사망재해율 수정내용 및 사업 반영 - '91. 6월 수립한 직업병예방종합대책 사업반영 ○ 관련부처협의 ○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상정 ○ 수정계획 공표 및 지방노동관서, 공단에 시달 ○ 목표 관리책임제 시행지침 시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표관리책임제 시행대상 : 년도별, 사무소별 재해감소 목표 및 사망재해 감소목표 - 목표 관리책임제 시행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별, 사업장별(건설현장 포함) 전담직원 지정 책임제 실시 ※ 감독관 부족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지정책임제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지도원 직원 활용 • 지방노동관서장실에 상황판설치 감독관별, 매분기별 재해발생현황 파악(본부는 전국 현황파악 집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산재예방협의회 설치 지방노동관서(1급지)는 매분기별로 회의개최 평가 및 대책강구 • 본부 및 지방청에서는 목표미달, 실적부진 지방노동관서 순회지도 	'92. 8. 15 '92. 8. 15 '92. 9. 10~9. 30 '92. 10. 초순 '92. 10. 중순 '92. 8. 15~8. 31	
2. 사망등 중대 재해 감소대책 수립·시행	가. 재해 감소 목표 관리책임제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별, 사업장별(건설현장 포함) 전담직원 지정 책임제 실시 ※ 감독관 부족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지정책임제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지도원 직원 활용 • 지방노동관서장실에 상황판설치 감독관별, 매분기별 재해발생현황 파악(본부는 전국 현황파악 집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산재예방협의회 설치 지방노동관서(1급지)는 매분기별로 회의개최 평가 및 대책강구 • 본부 및 지방청에서는 목표미달, 실적부진 지방노동관서 순회지도 	'92. 9~ 매분기별 매분기별	

분야	단위사업	세부추진내용	추진일정	비고
3. 건설재해 예방강화	가. 건설현장 규모별 예방대책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안전보건법령등 관계규정 개정 ○ 대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점검대상 건설현장 평약(1,000개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규모 30억원이상으로서 재해가 다발하는 지하철등 토목·건축공사 위주로 선정 • 1개 점검팀당 5개소씩 점검(1일 2개소) ※ 점검팀은 근로감독관, 안전공단직원,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기술사, 대학교수 등 3인 1개조로 편성(지하철현장은 서울시, 철도청등 발주기관과 협동점검반 구성) - 점검지침 시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 점검 1개월전 점검대상, 주요점검사항, 점검후 조치등 세부지침을 지방관서등에 시달 • '93년부터는 년초사업계획 작성시 세부지침 작성 - 점검시기 및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빙기(2월), 장마철(6월), 동절기(11월) • 점검 실시월에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점검 • 점검계획을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 개선토록한 후 점검실시 - 홍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국적인 점검실적을 취합하여 TV, 신문등에 홍보 • 본부 홍보후 각 지방청별(서울청 제외)로 지방언론을 통해 홍보 ○ 재해다발건설현장 특별지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도대상 평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: APT등 건축공사, 플랜트, 교량공사로 지상 5층이상 산재가입전건설현장('92 : 3,000개소, '94 : 4,000개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도로, 토지정리, 준설, 포장, 조경공사 등은 제외 • 방법 : 지방관서 관할 시.군.구 등의 건축허가 현황 평약,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및 현지답사 확인 - 지도지침 시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별 전담자 지정 :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·공단직원 • 지도중점 : 추락, 전도, 충돌, 낙하, 협착, 무리한동작등 6종 	매점검 15일전 '92. 9. 30 매년 2,6,11월 (3일간) '92. 11~ '92. 8. 15~8. 30 '92. 9. 1~9. 15	

분야	단위사업	세부추진내용	추진일정	비고
	나. 관련제도 개선	<p>※ 사전지도반 요원에 대한 재해예방기법교육(산업안전교육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주 1회이상 현장방문, 사업장 대장작성 및 지속적 사후관리 • 위험요인에 대한 지도 및 경고스티커 부착, 2회이상 미개선시는 작업중지 또는 사용중지 조치 • 월1회 지역별담당자 회의개최(실격평가 및 대책협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년2회 종합평가 실시 <p>○ 공사진척도에 따른 표준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실태현장조사(50대 건설업체 안전관리 실태 조사와 병행) – 사용기준 제정(안) 작성 및 고시개정 <p>○ 설계서상의 시공기간 준수 의무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내용 : 건설공사 도급시 안전작업 수행을 저해할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단축등 조건부과금지 규정 시행방안 강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관련 시행근거 신설 – 정부발주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등 정부기관에 협조요청 <p>○ 원·하도급업체간 안전보건조치 공동책임제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 설정 – 내용확정 및 관계법령(산업안전보건법) 개정안 작성 <p>○ 노사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검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제도개선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별실적 요율 적용사업장에 건설업 포함 – 추진일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동보험국에서 법령개정 검토 및 추진 <p>○ 재해다발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제재요건증 위해를 끼친자의 범위에 근로자사상 포함 및 제재기간 단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입찰참가제한기간을 2년6개월~3년이하→1년미만) – 건설업법(건설부), 예산회계법(재무부)개정 요청 <p>○ 우수시공업체 평가시 안전시공평가비중 상향조정(현5%→10%) 및 정부공사 입찰우선권 부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건설기술관리법(건설부)개정 요청 <p>○ 건설현장 안전교육 이수 카드제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관련 교육규정 개정 및 지침시달 	'92. 9. 1~9. 15 '92. 9~ '92. 9~ '92. 9. 25~ '93. 12. 31 3, 9월 '92. 9. 1~11. 15 '92. 11. 15~12. 30 '92. 8~12. 31 '92. 8~12. 31 '92. 8~ '92. 8~ '92. 8~ '92. 8~ '92. 8~ '92. 8~ '92. 8~ '92. 8~ '92. 9~	추후법령개정시

분야	단위사업	세부추진내용	추진일정	비고					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내용 : 범국민적 무재해운동 추진에 따른 실무차원의 협조사항 논의 - 참여대상 : 노총, 상공회의소, 경총, 지방관서, 공단, 안전협회,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,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 <p>○ 무재해 산업사회를 위한 노·사·정간담회 개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시 : 1992. 8. 21(금) 07:30~09:00 - 참석대상 : 99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측(8명) : 노동부장관, 기획관리실장, 노사정책 실장, 산업안전국장, 노동보건국장외 • 근로자대표(23명) : 노총위원장, 사무총장, 산업안전보건국장, 21개산별노련위원장등 • 사용자대표(6명) : 경총, 상공회의소,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의의장 및 산업안전보건부서장 • 재해예방단체(12명) :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등 • 50대 기업대표(50명) - 회의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재해감소대책 수립배경, 주요내용 및 추진방법 설명 • 노·사 및 재해예방단체별 협조사항 <p>○ 현황('92. 7. 31 현재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대상</th> <th>참여사업장</th> <th>참여율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1,000개소</td> <td>26,463개소</td> <td>52%</td> <td>각급사무소를 제외한 10인 이상 전사업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	참여사업장	참여율	비고	51,000개소	26,463개소	52%	각급사무소를 제외한 10인 이상 전사업장	'92. 8. 21	
대상	참여사업장	참여율	비고									
51,000개소	26,463개소	52%	각급사무소를 제외한 10인 이상 전사업장									
	나. 전사업장 무재해 운동참여 확대	<p>○ 단계별 점진적 확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92 : 6,000개소, '93 : 19,000개소 - 대상선정 : 재해다발업체, 중소영세사업장, 사업장 밀집지역(공단등) 입주업체 우선 선정 <p>○ 추진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노총, 경총, 상공회의소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재해운동 세미나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체별 세미나개최계획(안) 작성, 산하지부에 시달 - 참석대상 : 산하지부(조합) 회원 및 회원사 - 개최시기 : '92. 9월중 - 개최장소 : 자체회의실(또는 임차) 2) 무재해운동 실천요원 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주관 : 공단지도원, 필요시 안전협회 활용 - 목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92 : 6,000명(공단지도원) • '93 : 20,000명(공단지도원, 대한산업안전협회) 	'92. 9~'93. 12.31									
			'92. 9~'92. 10									
			'93. 1~10									

분야	단위사업	세부추진내용	추진일정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대상 : 직·조반장등 관리감독자(건설현장 포함), 노조조합장등 전임자 ※ 대상선정 : 지방사무소 협조 - 교육방법·시간 : 10개지도원(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장, 주강사 1, 보조강사 3) 1회 50명 8시간 압축교육 - 주요교육내용(공단교재 활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업전 무재해 3대실천운동(작업전 안전점검, 정리정돈, 보호구의 착용)의 전개 • 위험예지훈련 • 위험표지 부착등 <p>3)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점검체계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체독려반 편성·운영(노총, 경총, 상공회의소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편성 : 각 단체별 산업안전부서장(반장), 부서원(반원) • 운영 : 월별, 분기별등 정기적으로 순회, 산하회원사 추진상황 수시점검 •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·평가·분석 <p>4) 무재해운동 독려반 편성·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편성 : 10개반(본부 산업안전국 사무관, 공단, 부장급 각 1명) -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재해운동 실천요원 교육이수사업장 실시여부 점검·독려 • 세미나, 무재해 실천요원 교육상황등 점검 및 독려 • 지역별 사업효과 분석·평가 <p>※ 무재해 실천요원 교육 강사와 무재해운동 독려 반원등에 대해서는 안전공단 무재해추진실 주관으로 사전교육 실시</p>	'92. 9~	
			'92. 8~	
			'92. 8. 15~8. 31	
다. 무재해운동 참 여사업장의 목 표달성 독려 지 도	○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92상반기까지의 전참여업체와 신규참여업체 		'92. 8	
	○ 지도담당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노동관서, 공단, 대한산업안전협회, 산업안전관리 대행협회 			
라. 무재해운동 전 문요원 교육	※ 협회는 회원사 및 대행사업장 분담			
	○ 교육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위노조조합장등 전임자,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 관리자, 직조반장등 관리감독자 - 무재해운동 실천요원 교육이수자등 희망자 		'92. 9	
	○ 목표 : 400명('92후반기), 2,000명('93)			
	○ 교육기관 : 한국산업안전공단 무재해추진실			

분야	단위사업	세부추진내용	추진일정	비고
	마. 운동추진에 대한 메리트제도 입	<p>※ 공단의 교육은 교육원 수용능력 감안 조정(안전관리자 직무교육, 합숙→비합숙)</p> <p>※ 교육내용, 교육시간, 교재등은 현행과 동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감독면제기준 제정·시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재해운동목표 1배이상 달성시 : 일체의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면제 - 전년대비 50% 이상 재해감소시 : 정기감독 면제 - 무재해운동 신규 참여업체 '92년 정기감독 보류 ○ 무재해달성성과를 포상금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상금지급방안 작성시달 - 안전보건위원회(노사협의회)에서 채택 권유·지도 - 포상금 지급사업장 명단 홍보 ○ 무재해 교육이수자의 산안법상 직무교육(보수)면제 및 무재해운동 실시사업장 사내안전보건교육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제기준 제정 시달 ※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○ 무재해 달성사업장 정부포상제도 정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격상 : 총무처와 협의(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개정) - 재해예방활동 우수업체 안전관리대상 제정(총무처 협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: 대기업, 중소기업으로 구분 우수업체 선정 • 선정기준 : 노총·경총등과 협의 확정 - 재해감소업체 정부포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포상제외기준 설정 •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포상시 재해다발업체 제외 협조요청 	'92. 8~8. 31	
	바. 무재해운동 참여 유도 홍보전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문·TV 등 홍보매체를 통한 운동참여 유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특집 제작 : 2회 - 공익광고 제작 방영('92 : 4편, '93 : 4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KBS 공익광고협의회와 협의 ○ 무재해운동소개 책자 및 표어, 포스타 제작·배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행부수 : 소개책자 5만부, 표어·포스타 각 10만부 - 배포 : 산재취약사업장, 무재해운동 참가사업장 대상 ○ 무재해추진 우수사례 VTR제작, 배포(12편) ○ 재해예방 우수업체 및 무재해달성사업장 성공사례 발굴·전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수업체 선정기준 제정 및 지침시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노동관서별 선정 분기별, 반기별, 년별 최우수업체 선정, 7월 안전보건대회 정부포상 우선추천 	'92. 8. 31 '92. 8~ 수 시 '92. 8~8. 31 '92. 8. 15~12. 31 '92. 8~12. 31 '92. 8. 31 '92. 8 '92. 8~9. 10 '92. 9~12. 31 '92. 9~ '92. 9. 30 '93. 1~	

분야	단위사업	세부추진내용	추진일정	비고
5. 50인미만 중 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	가. 재해예방활동 국고지원 사업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공사례집 발간·배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우수업체는 산업안전신문 및 기업사보, 노보등에 제재·소개 ○ 업종별·지역별 무재해운동 시범사업장 지정·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지방노동관서별 관할 지역내 무재해목표달성 사업장중에서 지정(업종별) - 무재해운동 참여업체 또는 미참여업체 견학코스로 활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해다발업체, 사망등 중대재해발생업체 사업주, 관리감독자, 근로자 수시견학 ○ 지원내용('93 예산안 요구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·보건관리대행 -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 ○ 사업실시를 위한 준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- 사업시행 전문기관 선정 - 사업시행지침 작성 	수시	

[예시]

-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금융규제 및 지원강화(제무부와 협의)
 - 각 금융기관의 『중소기업 시책별 특별지원자금』 선정기준에 산업재해율 포함
 - 각 기업이 무재해 달성을 시에는 『우선지원 대상』으로 선정
 -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건설업 면허갱신시(매3년) 중대재해 다발업체 제외하는 방안 검토
-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대여(lease)제도 신설방안 검토
- 간접규제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

'92. 9

분야	단위사업	세부 추진 내용	추진일정	비고
6. 직업병 예방 대책 지속추진	가. 근로자 건강관리 체계확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간접규제 정책확정 및 추진 ○ 보건관리자의 직무보강으로 직업병 예방조치 강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장 보건관리자 업무편람 개발 보급 - 보건관리자 선임 등 일제점검 실시 - 지역별 대행기관 일제점검 실시 - 보건관리 대행기관 관리규정 개정 ○ 폐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심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유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T.H.P 사업 연구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	'92. 10	
	나. 건강진단 내실화 및 사후조치 확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강진단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정착지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진기관 지정제도 검토 - 검진항목·주기 및 방법 - 건강진단 통계방법의 개선 ○ 불량의료기관 일제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강진단 누락방지 및 임상검사 철저등 ○ 제조업체 작업환경센서스 실시('9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93 작업환경실태 센서스 실시단 구성(한국산업안전공단내) - 예비조사 : 100개소 - 본조사 : 5인이상 제조업체 전수(65,000여개소) - 작업환경실태 센서스 결과 전산처리 및 활용 	'92. 12	'93. 2
	다. 작업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정도관리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도관리실시 결과에 따른 측정기관의 측정, 분석자에 대한 교육 - 작업환경측정실시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실시(제2회) ○ 작업환경불량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시정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등 강력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점검종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- 중금속등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[- 안전·보건 정기감독 [- 안전보건개선계획 [- 기타 각종 사업장지도 점검등 ※ 매년 사업계획수립시 반영 	'92. 7~8	'92. 9~10 '93. 1~10 '93. 11~
	라. 전문 연구 기관 지원 및 인력의 양성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보건연구원 기능 활성화(직업병 예방 기술연구 및 판정업무) ○ 연구용역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해요인별 근로자건강보호방안 강구등 - 산업보건 장비 구입자금 지원 확대 ○ 주요국립대에 산업의학 연구소 설치(8개 국립대) 추진 	'92. 8~	'92. 8~ '92. 8~ '92. 8~'93. 12

분야	단위사업	세부추진내용	추진일정	비고
7. 산재예방관련조직 확충	본부, 지방노동관서 관서, 공단조직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남대, 경상대 기 설립, 서울대·부산대등 설치 촉구 - 산업의학연구소 설립시 연구용역 우선배정등 지원 확대 ○ 직업병예방 전문인력 양성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보건전문인력 향상을 위한 장학금 지급 - 산업의학전문의 제도 신설: 보사부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및 대국민홍보 - 산업위생기사 양성: 대학에 관련학과 증설협조 ○ 확충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본부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재해와 지속적 증가에 따른 사망등 증대재해 감소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(건설안전과) [지방노동관서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감독관 증원: 90명('9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현감독관 1인당 557개 사업장 담당→300개 사업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지방노동관서에 전축·토목직 1명씩 배치(45명) [공단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재해추진 조직보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재해 추진실 (부장1명, 과장1명)→무재해추진본부(부장1명, 과장2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과장 1명은 공단직제 개정전 잠정배치('92. 9 이전) ○ 추진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부 및 지방조직 보강: 총무처와 협의추진 - 공단: 공단법 및 직제를 개정하여 추진 	'92. 8~'93. 6 '92. 8~'93. 6 '92. 8~ '92. 8~9. 30 '92. 8~ '92. 8~9. 30 '92. 8~12. 31 '92. 8~12. 31	

**안전제일 실천하면
무재해도 달성된다**

'92년도 지방노동관서별 목표재해율 및 재해율 감소목표 변경내역

	변경 전(%)		변경 후(%)		비 고
	목 표 재 해 율	재 해 율 감소목표	목 표 재 해 율	재 해 율 감소목표	
총 계	1.33	-17.90	1.30	-19.75	
소 계	1.21	-18.79	1.18	-21.05	
서 울 청	0.38	-20.83	0.56	16.67	추정근로자수 : 621,061명, 추정재해자수 : 3,478명
서울동부	1.17	-18.75	1.64	13.89	추정근로자수 : 196,756명, 추정재해자수 : 3,228명
서울서부	0.77	-11.49	0.74	-13.75	
서울남부	1.47	-21.39	1.44	-23.65	
서울북부	1.09	-16.15	1.06	-18.41	
서울관악	1.31	-7.09	1.28	-9.35	
춘 천	1.39	-17.75	1.36	-20.01	
태 백	5.99	-19.49	5.96	-21.75	
강 릉	1.64	-8.89	1.61	-11.15	
원 주	1.81	-30.65	1.78	-32.91	
영 월	3.86	-24.76	3.83	-27.02	
소 계	1.42	-17.44	1.39	-19.70	
부 산 청	1.71	-14.50	1.68	-16.76	
부산동래	1.18	-14.49	1.15	-16.75	
부산북부	1.83	-25.31	1.80	-27.57	
마 산	1.13	-18.12	1.10	-20.38	
울 산	1.33	-15.82	1.30	-18.08	
양 산	1.33	-	1.30	-	
진 주	1.45	-12.65	1.42	-14.91	
충 무	1.93	-16.81	1.90	-19.07	
소 계	1.11	-15.27	1.08	-17.53	
대 구 청	1.14	-16.79	1.11	-19.05	
대구남부	1.05	-14.63	1.02	-16.89	
포 항	1.06	-7.83	1.03	-10.09	
구 미	0.63	-17.11	0.60	-19.37	
영 주	4.31	-16.96	4.28	-19.22	
안 동	1.27	-11.81	1.24	-14.07	
소 계	1.57	-19.07	1.54	-21.33	
인 친 청	1.93	-18.22	1.90	-20.48	
인천북부	1.87	-15.77	1.84	-18.03	
수 원	1.18	-20.27	1.15	-22.53	
부 천	1.95	-24.42	1.92	-26.68	
안 양	1.56	-18.32	1.53	-20.58	
안 산	1.56	-24.27	1.53	-26.52	
의 정 부	1.22	-7.58	1.19	-9.84	
성 남	1.63	-29.74	1.60	-32.00	
소 계	1.23	-17.45	1.20	-19.71	
광 주 청	1.31	-20.12	1.28	-22.38	
전 주	1.42	-17.92	1.39	-20.18	
이 리	1.13	-13.74	1.10	-16.00	
군 산	1.42	-17.92	1.39	-20.18	
목 포	1.41	-16.07	1.38	-18.33	
여 수	0.94	-13.76	0.91	-16.02	
제 주	1.16	-17.73	1.13	-19.99	
소 계	1.20	-16.67	1.17	-18.93	
대 전 청	0.94	-12.96	0.91	-15.22	
청 주	1.26	-13.70	1.23	-15.96	
천 안	1.17	-13.33	1.14	-15.59	
충 주	1.22	-39.00	1.19	-41.26	
보 령	2.25	-10.36	2.22	-12.62	

* 서울청 및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의 목표치는 '92. 1/4분 기말 근로자수 비율 및 서울청 산안 32150-985('92. 7. 18)을 기준으로 산정함

'92년도 지방노동관서별 사망재해 감소목표

	'91년 실적			'92년 목표		비 고
	근로자수	사망자수	만인율	추정 사망자수	만인율	
총 계	7,922,704	2,299	2.90	1,926	2.43	※ 감소목표 △ 16.21%
소 계	2,018,274	692	3.43	572	2.83	
서 울 청	310,468	31	1.00	68	1.07	추정근로자수 : 636,299명
서 울 동부	527,417	128	2.43	63	3.13	추정근로자수 : 201,586명
서 울 서부	207,894	28	1.35	23	1.11	
서 울 남부	321,615	89	2.77	74	2.30	
서 울 북부	227,699	43	1.89	35	1.54	
서 울 관악	194,473	42	2.16	34	1.75	
춘 천	45,062	17	3.77	14	3.11	
태 백	36,836	133	36.11	110	29.86	
강 릉	86,260	46	5.33	38	4.41	
원 주	28,980	21	7.25	18	6.21	
영 월	31,570	114	36.11	95	30.09	
소 계	1,587,480	379	2.39	343	2.16	
부 산 청	298,669	79	2.65	65	2.18	
부 산 동래	211,908	36	1.70	29	1.37	
부 산 북부	194,403	66	3.40	54	2.78	
마 산	373,704	75	2.01	62	1.66	
울 산	383,698	84	2.19	69	1.80	
양 산	—	—	—	31	2.32	추정근로자수 : 133,672명
진 주	79,524	25	3.14	21	2.64	
충 무	45,574	14	3.07	12	2.63	
소 계	911,024	266	2.92	220	2.41	
대 구 청	332,520	85	2.56	70	2.11	
대 구 남부	205,160	39	1.90	32	1.56	
포 항	201,292	52	2.58	43	2.14	
구 미	125,386	18	1.44	15	1.20	
영 주	23,046	63	27.34	52	22.56	
안 동	23,620	9	3.81	8	3.39	
소 계	1,903,220	452	2.37	372	1.95	
인 천 청	229,354	75	3.27	62	2.70	
인 천 북부	245,078	58	2.37	48	1.96	
수 원	367,290	76	2.07	63	1.72	
부 천	213,769	50	2.34	41	1.92	
안 양	195,573	46	2.35	38	1.94	
안 산	152,834	32	2.09	26	1.70	
의 정 부	329,282	47	1.43	38	1.15	
성 남	170,040	68	4.00	56	3.29	
소 계	741,521	277	3.74	228	3.07	
광 주 청	212,163	76	3.58	63	2.97	
전 주	115,055	42	3.65	34	2.96	
이 리	76,732	17	2.22	14	1.82	
군 산	56,068	35	6.24	28	4.99	
목 포	66,562	20	3.00	17	2.55	
여 수	161,150	74	4.59	61	3.79	
제 주	53,791	13	2.42	11	2.04	
소 계	761,185	233	3.06	191	2.51	
대 전 청	339,744	62	1.82	51	1.50	
청 주	137,549	36	2.62	29	2.11	
천 안	129,222	50	3.87	41	3.17	
충 주	75,312	32	4.25	27	3.59	
보 령	79,358	53	6.68	43	5.42	

※ 1. 서울 청 및 서울동부,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'92. 1/4분기 근로자수 비율 및 실적(만인율)을 기준으로 산정함
 2.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전국 평균목표치를 준용함